

붙임 2

비수도권 지역인재

◇ 비수도권 지역인재 ◇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포함)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- 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 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」 기준
- * 아래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 해당 여부는 인사혁신처 「균형인사지침」 참고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
- **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실 것**
 - * (예시) 건국대 충주 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한양대 안산 캠퍼스, 고려대 세종 캠퍼스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
- (5)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2개 이상 대학의 재학 이력이 있는 경우

- (1)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졸업(예정)인 경우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(2)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- (3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- (4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을 졸업(예정)인 경우
 - 지방대학 중퇴 후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
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 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
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